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 추가 〉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058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인요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설치·점검·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 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u><신설></u>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 ----- ----- ----- -----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u>26.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이라 한다).</u> <u>이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18.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의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현행법 제56조에 따

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집 같은 협소한 공간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출입하여 아동·청소년과 대면접촉하고 성범죄를 행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취업제한은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들은 학교, 유치원, 청소년지원센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경비업, 의료인, PC방 등 아동·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지속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업종임.

그런데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와 같이 직접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업무도 있는 반면, 비 일상적으로 부모 등 보호자와 미리 방문시간을 약속하고 보호자가 있는 시간에 주로 방문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종사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취업제한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에서 법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규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8호1)에 따라 이미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라목·마목2)에 따라 성범죄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2025년 1월 17일 시행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라목·마목3)에 따라 성범죄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각 호의의 부분 생략)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1.16.개정, 2025.1.17.시행예정)」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자가 될 수 없음.

<현행법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0453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그 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면서 해당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은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